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96
----------	------

2020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안광석 의원(찬성자 15명)

나. 발 의 일 : 2020년 9월 24일

다. 회 부 일 : 2020년 10월 26일

라. 상 정 일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1월 2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광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명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2) “같은 법 시행령”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 3) 제12조를 삭제함.

###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3) 입법예고(2020. 10. 29. ~ 11. 5.) 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조례안의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2016.9.13.)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u>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종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u>공사로 한다.</u>

- 동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범위를 삭제(2016.9.13.)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명 개정과 현행 공사 추정가격 20억원 이하의 상한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12조를 삭제하고 기타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범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나. 제명 개정 (안 제명)

- 본 개정안 제명 개정 사항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위임 근거가 삭제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별도로 시행령 제59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명에 담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본 조례개정안 제명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u>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u>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u>주민 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u>

○ 다만,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명에 적극 담으려는 취지로 인하여 제명이 지나치게 긴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 법령의 대표 위임사항을 중심으로 함축적인 제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

-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 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 [2016. 9. 13, 일부개정령으로 상한금액 조례 위임사항 삭제]
- 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본 조례 제명 >**

광역지방자치단체	제 명
서울특별시(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b>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b>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조, 안 제12조)

- 안 제1조는 시행령 제60조제2항 개정(2016.9.13.)으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 같은 사유로 안 제12조는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 상한액을 2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폐지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한 통일된 체계를 갖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본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적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u> ----- ----- ----- -----.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삭 제>
---	-------

- 다만, 2016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방치되었는바, 재무국은 법체계의 명확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최근 3년간 주민참여감독 제도 실적도 미미하고 나아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제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운영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공사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감독자 수	지급수당	발주부서
1	남산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공사	'19.9.23	'19.12.15	407	(주)티시스 제일토건(주)	1	없음	중부 공원녹지 사업소
2	남산공원 내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19.10.16	'19.11.30	129	다원환경건설주식회사	1	없음	
3	남산공원 유아숲 체험시설 정비공사	'20.4.9	'20.5.28	67	산림조합중앙회	1	없음	
4	낙산공원 노후데크 정비공사	'20.4.10	'20.5.28	176	대흥토건 (주)	1	없음	
5	중랑캠핑숲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공사	'20.6.1	'20.9.25	247	건탑산업개발(주)	1	없음	

**라. 준용 법령 명확화 및 법령 상 정의된 용어로 정비 (안 제6조, 안 제14조)**

- 안 제6조는 현행 조례에서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명을 직접 명기하지 않고 있는바, 소위원회 구성 분야를 준용하고 있는 법령명을 직접 기재하려는 것이고,

- 안 제14조에서는 근거 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사항을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대로 정비(주민참여 감독자 → 주민참여감독자)하여 조문 해석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바, 시민이 법령 등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같은 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6조(소위원회) ① ----- ----- -----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u>주민참여 감독자</u>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 <u>주민참여감독자</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96
----------	------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4일

발 의 자 : 안광석 의원(1명)

찬 성 자 : 노승재, 김용연, 김희걸,  
김용석, 김 경, 유 용,  
김호평, 황규복, 김화숙,  
유정희, 김제리, 김인호,  
김생환, 김춘례, 김동식 의원  
(15명)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다. 제12조를 삭제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  
위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  
사의 범위 및”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주민참여 감독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  
-----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 주민참여  
감독자-----  
-----  
-----.

② (현행과 같음)